

이사회규정

제본 및 복사본은 Uncontrolled Document임



목 차

제1장 총칙

1.1 목적	1-1
1.2 적용범위	1-1
1.3 권한	1-1

제2장 구성

2.1 구성	2-1
2.2 의장	2-1

제3장 회의

3.1 회의구분 및 개최주기	3-1
3.2 회의소집	3-1
3.3 결의	3-1
3.4 결의사항	3-2
3.5 이사회 내 위원회	3-3
3.6 이사회 지원 체계	3-4
3.7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	3-4
3.8 의사록	3-4
3.9 간사	3-5

제4장 보칙

4.1 규정의 개폐	4-1
------------	-----

제5장 부칙

5.1 시행일	5-1
---------	-----

제1장 총 칙

1.1 목적

본 규정은 주식회사 티웨이항공 정관(이하 '정관'이라 한다)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2 적용범위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3 권한

1.3.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
1.3.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2장 구 성

2.1 구성

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2.2 의장

2.2.1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.

2.2.2 대표이사 유고시는 **부대표, 총괄임원, 담당임원, 기타비상무이사, 사외이사**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본 및 복사본은 Uncontrolled Document임

제3장 회 의

3.1 회의구분 및 개최주기

3.1.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3.1.2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한다.

3.1.3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3.2 회의소집

3.2.1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
3.2.2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대표 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3.2.3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회의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 집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3.2.1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 집할 수 있다.

3.3 결의

3.3.1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, 동법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, 본 규정 3.4.2.3, 감사위원회위원 해임에 관한 승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 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
3.3.2 이사회는 이사들이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이사의 일 부 또는 전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 로 본다.

3.3.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3.3.4 3.3.3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3.4 결의사항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.

3.4.1 주주총회 관련사항

3.4.1.1 주주총회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 및 보고에 관한 사항

3.4.1.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

3.4.1.3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

3.4.2 경영 관련사항

3.4.2.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3.4.2.2 중요한 계약 및 소송, 중요한 차입 및 고정자산 매입 등에 관한 사항

3.4.2.3 금액에 상관없이 업무와 무관한 계약 및 자금거래 등에 관한 사항

3.4.2.4 기재의 도입 및 처분, 반납에 관한 사항

3.4.2.5 연간 사업계획

3.4.2.6 투자에 관한 사항

3.4.2.7 중요시설의 신설 및 폐쇄

3.4.2.8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
3.4.2.9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설정

3.4.2.10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하고자 하는 주요 경영사항

3.4.3 조직 및 임원 관련사항

3.4.3.1 중요한 사내 규정의 제·개정 또는 폐지

3.4.3.2 상법 제397조,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의한 이사의 경업거래, 겸직, 회사기회유용거래 및 자기거래 승인

3.4.3.3 공동대표의 결정

3.4.3.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
3.4.3.5 대표이사, 집행임원,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, 분담할 직무의 범위

3.4.3.6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,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제

외

3.4.3.7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의 보수 기타 보상의 결정

3.4.3.8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

3.4.3.9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
3.4.3.10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
3.4.4 자본조달 및 자본금 관련사항

3.4.4.1 주식 및 채권의 발행 결정

3.4.4.2 자본금 변경, 제준비금 자본전입, 주식 소각에 관한 사항

3.4.4.3 자산 재평가

3.4.4.4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

3.4.4.5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

3.4.5 기타 사항

3.4.5.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

3.4.5.2 본점(본사)의 이전, 지점 설치, 이전 및 폐지

3.4.5.3 자회사의 설립(인수) 및 매각

3.4.5.4 주주총회 위임사항

3.4.5.5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
3.4.5.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.5 이사회 내 위원회

3.5.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3.5.1.1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

3.5.1.2 감사위원회

3.5.1.3 경영위원회

3.5.1.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
3.5.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3.5.2.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
- 3.5.2.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3.5.2.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3.5.2.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3.5.3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3.5.4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3.5.5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3.5.6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3.6 이사회 지원 체계

3.6.1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3.6.2 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, 회계, 경영자문 등을 요청한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.

3.7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

3.7.1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3.7.2 위 3.7.1의 경우, 이사회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및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3.8 의사록

3.8.1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3.8.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3.8.3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이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3.8.4 회사는 3.8.3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이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 할 수 있다.

3.9 간사

3.9.1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3.9.2 간사는 회의의 소집통지, 의사록 작성 및 보관 등 이사회의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 처리를 한다.

제4장 보 칙

4.1 규정의 개폐

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제본 및 복사본은 Uncontrolled Document임

제5장 부 칙

5.1. 시행일

- 5.1.1 본 규정은 2010년 8월 27일부로 제정, 시행한다.
- 5.1.2 본 규정은 2013년 5월 14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- 5.1.3 본 규정은 2015년 2월 16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- 5.1.4 본 규정은 2015년 8월 17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- 5.1.5 본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- 5.1.6 본 규정은 2018년 4월 17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- 5.1.7 본 규정은 2019년 2월 13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- 5.1.8 본 규정은 2022년 10월 20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- 5.1.9 본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- 5.1.10 본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- 5.1.11 본 규정은 2024년 8월 8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- 5.1.12 본 규정은 2025년 7월 17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